

## 부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1995. 12. 12

나. 제안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1995. 12. 12

라. 상정일자 : 제4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10차 재무경제위원회(95. 12. 16)상정

마. 의결일자 : 제4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 3차 재무경제위원회(96. 6. 20)의결

###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가. 제안이유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업체 등이 교통수요관리를 실시하여 교통량을

20퍼센트 이상 감축하는 경우

- 당해 교통유발부담금의 50퍼센트까지 경감하여 교통혼잡의 주원인이 되는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고 대도시 교통난 완화와 대중교통 이용문화를 정착 시키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단위부담금 인상(안 제3조)

-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연간부과액 50만원 이상인 시설물은 단위부담금을 현행 350원에서 500원(42.8퍼센트)으로 인상하고
- 제외대상 시설물은 현행과 같이 350원으로 함

○ 경감률 적용(안 제4조)

- 의무감축방안만 시행할 경우 : 20퍼센트 경감
- 의무감축방안과 추가감축방안을 시행할 경우 : 50퍼센트까지 경감
- 의무감축방안을 시행하지 않고 추가감축방안을 실시할 경우 경감적용 대상에서 제외

○ 시행기간 및 적용방법(안 제4조)

- 의무감축방안 : 1년 동안 반드시 시행(20퍼센트 경감)
- 추가감축방안 : 연간 9개월 이상 시행(30퍼센트까지 경감)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교통량 의무감축방안과 추가감축방안을 모두 이행한 자에 대하여 경감률 적용은 어떻게 합니까?	○ 의무감축방안과 추가감축방안을 모두 이행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50까지 경감률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의무감축방안은 이행하지 않고 추가감축방안만을 이행하면 경감률 적용은 어떻게 합니까?	○ 그런 경우에는 경감률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취지는?	○ 지금까지의 교통정책이 도로를 늘리고 주차장을 확대하는 공급측면에 역점을 두었지만 앞으로는 교통수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게 되어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교통유발시설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하고 이러한 시설들을 가진 사업주가 교통수요감축방안을 실시할 때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주어 교통수요를 억제하려는 데 있습니다.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수정가결

6. 소수의견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8. 체계적인 심사내용

○ 없음

부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안번호	제51호
의 결	96. 6. 28
년 월 일	(제46회)

제안년월일 : 1996. 6. 20.

제 안 자 : 재무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가. 단위부담금 인상 부과대상 시설물과 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를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규정하도록 하고

나. 교통량 의무감축방안을 이행한 자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률의 폭을 확대하여 이에 대한 참여의욕을 제고하며

다. 교통량 추가감축방안 중 시행상 어려움이 있는 사항을 삭제하고 자전거보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경감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교통수요관리효과를 거양하고자 수정하게 되었음

2. 주요골자

가. 단위부담금 인상 부과대상 시설물의 범위를 연면적 2,000㎡ 이상, 연간부과액 50만원 이상인 시설물에서 연면적 2,000㎡ 이상이고 부설주차장의 규모가 10대 이상인 시설물로 함(안 제3조)

나. 교통량 의무감축방안을 모두 이행한 자에 대한 경감률을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적용토록 하고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주변 공영주차장 요금의 100분의 50에서 공영주차장 요금 이상으로 결정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다. 교통량 추가감축방안을 이행한 자에 대한 경감률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20으로 적용토록 하고 추가감축방안 중 대중교통이용자에 대하여 보조하는 경우 경감률을 적용하는 것을 삭제하고 자전거 보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경감률을 적용하는 것을 추가(안 제4조제2항)

부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부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단위부담금의 조정)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9조의8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15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단위부담금을 다음 각호와 같이 조정한다.

1.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이고 부설주차장의 규모가 10대 이상인 시설물은 각층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500원
2.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물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이고, 부설주차장의 규모가 10대 미만인 시설물은 각층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350원으로 한다.

안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부담금의 경감률등) ①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9조의15 규정에 의한 교통량 의무감축방안을 모두 이행한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30의 경감률을 적용하며, 그 내용을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유료화할 경우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행하

여야 한다.

가. 주차요금은 시설물 안에 근무하는 종사자(이하 “종사자”라 한다)와 당해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 모두에게 징수하여야 한다.

나. 이용자를 위한 무료주차권 배부나 무료주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주차요금은 공영주차장 요금 이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라. 종사자에 대한 주차장 이용을 돕기 위하여 주차비 보조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종사자에 대하여 승용차 함께타기를 실시할 경우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승용차 함께타기를 전담하는 봉근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나. 승용차 함께타기의 조편성을 위하여 승용차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편성 계획을 운영하여야 한다.

3. 전직원을 대상으로 승용차 10부제 운영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의무감축방안은 1년간 실시하여야 한다.

②동법시행령 제9조의15 규정에 의한 교통량 추가감축방안을 이행한 자에 대하여는 이행한 프로그램의 범위 안에서 100분의 20 이내의 경감률을 적용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봉근버스를 운영할 경우 봉근버스 좌석수가 전체 종업원수의 60퍼센트 이상일 경우 100분의 10

2. 승용차 5부제를 운영할 경우 100분의 10

3. 승용차 2부제를 운영할 경우 100분의 20

4. 자전거 보관시설을 부설주차면수의 2배 이상 설치하는 경우 100분의 10

5. 출근 시차제를 실시할 경우 일상출근시간인 08:00시 전과 09:00시 후에 1시간 차이마다 100분의 5

6. 추가감축방안은 연간 9개월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의무감축방안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추가감축방안을 실시할 경우에는 부담금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안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9조의15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경감대상 시설물은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중 의무감축방안이나 추가감축방안을 시행하는 시설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199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3호서식]

교통량감축방안 이행계획서

시 설 개 요	명 칭			면 적		
	주 소			대 표 자		
	주 차 장 규 모	총 대	평면주차장 대	입주업체수		
			지하주차장 대	일상근무자		
		입체주차장 대				
의 무 감 축 방 안	주차장 유료화		승용차 10부제		승용차 함께타기	
	○ 주차장 요금		○ 시행방법		○ 통근용 승용차 : 대	
	○ 징수방법				○ 함께타기 조편성 : 대	
추 가 감 축 방 안	통근버스운영		운행대수 : 대, 좌석수 : 개			
	승용차 5부제		시행방법 :			
	승용차 2부제		시행방법 :			
	자전거보관시설		자전거 주차대수 : 대			
	출근시차제		출근시간 :			

부천시교통유발부담금정감등에관한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교통량감축방안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인)

부 천 시 장 귀하



[별표 제5호서식]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

시설 개 요	명 칭		면 적	
	주 소		대 표 자	
	주차장 규모	평면주차장 대	입주 업체 수	
		총 대 지하주차장 대 입체주차장 대	일상근무자	

신청경감률 총 %

결 정 사 항	구 분	감 축 방 안	계 획	실 적	신 청 경 감 률
	의 무 감 축 방 안		주차장 유료화		
		승용차 10부제			
		승용차 함께 타기			
추 가 감 축 방 안		소 계			%
		통근버스 운영			%
		승용차 5부제			%
		승용차 2부제			%
		자전거보관시설			%
		출근시차제			%

부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교통수요관리 프로그램을 이행하였기에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성명

직위(직명)  
(인)

부 천 시 장 귀하

[별표 제6호서식]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결정통보서

시 설 개 요	명 칭		면 적		
	주 소		대 표 자		
	주 차 장 규 모	평면주차장 대	입주업체수		
		총 대 지하주차장 대 입체주차장 대	일상근무자		
결 정 사 항	구 분	신 청 사 항	결 정 사 항	비 고	
	경 감 륜	%	%		
	의 무 감 축 방 안	%	%		
	추 가 감 축 방 안	소 계	%	%	
		통근버스운영	%	%	
		승용차 5부제	%	%	
		승용차 2부제	%	%	
		자전거보관시설	%	%	
출근시차제		%	%		

부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  
기와 같이 부담금경감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경감비율을 확정통보합니다.

년 월 일

부 천 시 장

○○ 기업체 대표 ○○○ 귀하

신·구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3조(부담금의 조정)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9조의8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15 규정에 의하여 단위부담금을 시설물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연간부과액 50만원 이상인 시설물은 각층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500원으로 하고, 제외대상 시설물은 현행과 같이 350원으로 한다.</p>	<p>제3조(단위부담금의 조정)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9조의8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15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단위부담금을 다음 각호와 같이 조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이고 부설주차장의 규모가 10대 이상인 시설물은 각층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500원</li> <li>2.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물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이고, 부설주차장의 규모가 10대 미만인 시설물은 각층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350원</li> </ol>
<p>제4조(부담금의 경감) ①동법시행령 제9조의15 규정에 의한 교통량 의무감축방안을 모두 이행한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의 경감률을 적용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승용차 합께타기를 실시할 경우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교통수요관리를 전담하는 통근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li> </ul> </li> </ol>	<p>제4조(부담금의 경감물등) ①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9조의15 규정에 의한 교통량 의무감축방안을 모두 이행한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30의 경감률을 적용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유료화할 경우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주차요금은 시설물 안에 근무하는 종사자(이하 "종사자"라 한다)와 당해</li> </ul> </li> </ol>

개 정 안	수 정 안
<p>나. 승용차함께타기의 조편성을 위하여 승용차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편성 계획을 운영하여야 한다.</p> <p>2. 대중교통이용의 날을 매월 1회 지정 운영하되 전체 직원의 100분의 50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p> <p>3. 전직원을 대상으로 승용차 10부제 운영을 실시하여야 한다.</p> <p>4. 의무감축방안은 1년간 실시하여야 한다.</p> <p>②동법시행령 제9조의15 규정에 의한 교통량 추가감축방안을 이행한 자에 대하여는 이행한 프로그램의 범위 안에서 100분의 30 이내의 경감률을 적용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통근버스를 운영할 경우 전체 종합원수분의 통근버스 좌석수에 대한 비율</p>	<p>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 모두에게 징수하여야 한다.</p> <p>나. 이용자를 위한 무료주차권 배부나 무료주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p>다. 주차요금은 공영주차장 요금 이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p> <p>라. 종사자에 대한 주차장 이용을 돕기 위하여 주차비 보조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p>2. 종사자에 대하여 승용차 함께타기를 실시할 경우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p> <p>가. 승용차 함께타기를 전담하는 봉근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p> <p>나. 승용차 함께타기의 조편성을 위하여 승용차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편성 계획을 운영하여야 한다.</p> <p>3. 전직원을 대상으로 승용차 10부제 운영을 실시하여야 한다.</p> <p>4. 의무감축방안은 1년간 실시하여야 한다.</p> <p>②동법시행령 제9조의15 규정에 의한 교통량 추가감축방안을 이행한 자에 대하여는 이행한 프로그램의 범위 안에서 100분의 20 이내의 경감률을 적용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통근버스를 운영할 경우 통근버스의 좌석수가 전체 종업원수의 60퍼센트 이상일 경우 100분의10</p>

개 정 안	수 정 안
<p>2. 승용차 5부제를 운영할 경우 100분의 10</p> <p>3. 승용차 2부제를 운영할 경우 100분의 20</p> <p>4. 출근 시차제를 실시할 경우 일상출근시간 인 09:00시를 전후하여 1시간 차이마다 100분의 5</p> <p>5. 대중교통이용자에 대하여 월 20,000원 이상 상당의 대중교통승차권을 종사원의 100분의 75 이상에게 구입 지급할 경우 100분의 10</p> <p>6. 추가감축방안은 연간 9개월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p> <p>③의무감축방안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추가감축방안을 실시할 경우에는 부담금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p>	<p>2. 승용차 5부제를 운영할 경우 100분의 10</p> <p>3. 승용차 2부제를 운영할 경우 100분의 20</p> <p>4. 자전거 보관시설을 부설주차면수의 2배 이상 설치하는 경우 100분의 10</p> <p>5. 출근시차제를 실시할 경우 일상 출근시간 인 08:00시 전과 09:00시 후에 1시간 차이마다 100분의 5</p> <p>6. 추가감축방안은 연간 9개월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p> <p>③의무감축방안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추가감축방안을 실시할 경우에는 부담금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p>
<p>제5조(대상시설) 의무감축방안이나 추가감축방안을 시행하여야 할 대상시설은 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 중 2천제곱미터 이상, 연간부과액 50만원 이상인 시설물로 정한다.</p>	<p>제5조(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9조의15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경감대상시설물은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중 의무감축방안이나 추가감축방안을 시행하는 시설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단위부담금에 대한 경과조치) 단위부담금은 1996년 7월 31일 기준으로 부과하는 1996년도 부과분부터 적용하되, 1995년 8월 1일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시설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350원을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199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p>

[수정안 포함]

부천시조례 제 호

### 부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8제2항, 제9조의15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담금”이라 함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
2. “의무감축방안”이라 함은 부담금 납부대상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사업의 경영자가 부담금을 경감받기 위하여 반드시 시행하여야 할 교통량감축방안을 말한다.
3. “추가감축방안”이라 함은 의무감축방안 이외에 부담금을 추가 경감할 수 있는 교통량감축방안을 말한다.

제3조(단위부담금의 조정)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9조의8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15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 부과대상시설물에 대한 단위부담금을 다음 각호와 같이 조정한다.

1.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이고 부설주차장의 규모가 10대 이상인 시설물은 각층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500원
2.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물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이고 부설주차장의 규모가 10대 미만인 시설물은 각층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350원

제4조(부담금의 경감률등) ①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9조의15 규정에 의한 교통량 의무감축방안을 모두 이행한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30의 경감률을 적용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담금 부과대상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유료화할 경우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주차요금은 시설물 안에 근무하는 종사자(이하 “종사자”라 한다)와 당해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 모두에게 징수하여야 한다.

나. 이용자를 위한 무료주차권 배부나 무료주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주차요금은 공영주차장 요금 이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라. 종사자에 대한 주차장 이용을 돕기 위하여 주차비 보조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종사자에 대하여 승용차 함께타기를 실시할 경우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승용차 함께타기를 전담하는 통근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나. 승용차 함께타기의 조편성을 위하여 승용차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편성 계획을 운영하여야 한다.

3. 전직원을 대상으로 승용차 10부제 운영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의무감축방안은 1년간 실시하여야 한다.

②동법시행령 제9조의15 규정에 의한 교통량 추가감축방안을 이행한 자에 대하여는 이행한 프로그램의 범위 안에서 100분의 20 이내의 경감률을 적용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통근버스를 운영할 경우 통근버스의 좌석수가 전체 종업원수의 60퍼센트 이상일 경우 100분의 10
2. 승용차 5부제를 운영할 경우 100분의 10
3. 승용차 2부제를 운영할 경우 100분의 20
4. 자전거 보관시설을 부설주차면수의 2배 이상 설치하는 경우 100분의 20
5. 출근시차제를 실시할 경우 일상 출근시간인 08:00시 전과 09:00시 후에 1시간 차이마다 100분의 5
6. 추가감축방안은 연간 9개월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의무감축방안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추가감축방안을 실시할 경우에는 부담금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9조의15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경감대상 시설물은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중 의무감축방안이나 추가감축방안을 시행하는 시설물로 한다.

제6조(통근관리인 선임) ①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통근관리인 선임·해임·변경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근관리인이 변경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통근관리인은 일상근무시간 중 100분의 25 이상을 통근관리에 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통근관리에 대한 기록유지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통근관리인 명부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연 1회 이상 관할구역 내 부담금 경감대상시설물의 통근관리인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시기는 매년 6월로 한다.

제7조(교통량 감축방안 이행계획서) ①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의무 및 추가감축방안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이행계획서 시행일자 적용은 신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8조(이행실태보고서 제출)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매분기말 기준으로 다음 분기 10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이행실태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이행실태보고서를 접수한 시장은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부담금 경감조정) ①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자는 매년 7월 31일 기준으로 지난해 8월 1일부터 시행한 교통량감축 이행 결과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부담금 경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경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경감신청내역을 확인·조사한 후 부담금경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담금 경감비율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경감비율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부담금 경감비율결정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부담금경감조정위원회) ①시장은 경감률을 적용하기 위하여 부담금경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로 하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에서 덕망있는 민간인을 30퍼센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③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며 부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며, 시 공무원 중에서 교통행정업무 담당부서의 과장과 계장이 직책을 수행하도록 한다.

⑤위원회는 부담금경감신청에 대하여 부담금 경감심의 및 경감률 결정 기능을 수행한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미 이행시 조치사항)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교통량 감축방안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미 이행한 경우의 조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으나 미 이행사항이 적발될 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시설물의 소유자나 사업의 경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의무감축방안을 미 이행한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부담금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2. 추가감축방안을 미 이행한 경우 미 이행한 감축방안에 대해서만 부담금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선 임  
 통근관리인  해 임 신고서  
 변 경

시 설 개 요	명 칭		면 적	
	주 소		대 표 자	
	입 주 업 체 수		일 상 근 무 자	
선 임 · 해 임 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소 속		전 화 번 호	
	직 위		선 · 해 임 일 자	
변 경 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소 속		전 화 번 호	
	직 위		변 경 일 자	

부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통근관리인 선임·해임·변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성명

직위(성명)  
(인)

부 천 시 장 귀하



[별표 제3호서식]

교통량감축방안 이행계획서

시 설 개 요	명 칭			면 적	
	주 소			대 표 자	
	주 차 장 규 모	총 대	평면주차장 대	입주업체수	
지하주차장 대			일상근무자		
의 무 감 축 방 안	주차장 유료화		승용차 10부제	승용차 함께타기	
	○ 주차요금		○ 시행방법	○ 통근용 승용차 : 대	
	○ 징수방법			○ 함께타기 조편성 : 대	
추 가 감 축 방 안	통근버스 운영	운행대수 : 대, 좌석수 : 개			
	승용차 5부제	시행방법 :			
	승용차 2부제	시행방법 :			
	자전거보관시설	자전거 주차대수 : 대			
	출근시차제	출근시간 :			

부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교통량감축방안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성명

직위(직명)  
(인)

부 천 시 장 귀하



[별표 제5호서식]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

시설 개 요	명칭			면적	
	주소			대표자	
	주차장규모	평면주차장 대	입주업체수		
	총 대	지하주차장 대	일상근무자		
		입체주차장 대			

신청경감률 총 %

구분	감축방안	계획	실적	신청경감률	
					%
의무 감축방안	주차장 유료화				%
	승용차 10부제				
	승용차 함께타기				
추가 감축방안	소계				%
	통근버스 운영				%
	승용차 5부제				%
	승용차 2부제				%
	자전거보관시설				%
	출근시차재				%

부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교통수요관리 프로그램을 이행하였기에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인)

부천시장 귀하

[별표 제6호서식]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결정통보서

시 설 개 요	명 칭		면 적		
	주 소		대 표 자		
	주 차 장 규 모	평면주차장 대	입주업체수		
총 대 지하주차장 대		일상근무자			
		입체주차장 대			
결 정 사 항	구	분	신 청 사 항	결 정 사 항	비 고
	경	감	률	%	%
	의	무	감 축 방 안	%	%
	정	소	계	%	%
			통 근 버 스 운 영	%	%
	사 추 가 감 축 방 안	추	승 용 차 5 부 제	%	%
			승 용 차 2 부 제	%	%
			자 전 거 보 관 시 설	%	%
출 근 시 차 제			%	%	

부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부담금경감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경감비율을 확정통보합니다.

년 월 일

부 천 시 장

○ ○ 기업체 대표 ○ ○ ○ 귀하

[별지 제7호서식]

미 이행 실태 확인통보서

구 분	기업체 이행계획서	미 이행 프로그램	미 이행 내용
의무 프로그램			
추가 프로그램			

년 월 일 교통수요관리 프로그램 이행실태를 현지 확인한 결과 귀사에서 제출한 이행계획서와 같이 시행하지 않았기 부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부 천 시 장

○ ○ 기업체 대표 ○ ○ ○ 귀하